

수신 수신자참조
(경유)

제목 **집합금지 조치 특수판매업체 조건부 집합제한 전환 통보**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서울시에서 '20. 6. 8일자로 집합금지 조치하였던 특수판매업체 (다단계·후원방문·방문판매)에 대해 '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와 이행확약서 제출'을 전제로한 조건부 집합제한으로 전환함을 통보합니다.
 - 대상시설 : 특수판매업체 (다단계·후원방문·방문판매)
 - 기 간 : 2020. 11. 7. ~ 별도 해제 시
3. 귀 업체에서는 강화된 서울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라며,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로 전환(원스크라이크-아웃)되고,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2호, 제8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, 귀 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, 방역비 등 손해배상(구상권)이 청구될 수 있으니 불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 - 계도점검 : 2020. 11. 7 ~ 11. 15, 이행점검 : 11. 16 ~ 계속
 - ※ 업체 방역관리자는 접촉자 발생즉시 관할 보건소 신고 사전검사 등 조치
4. 끝으로,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 -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 된 기일(10일)이내 의견 제출
 - ※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음으로 봄
 -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

불임 중점관리시설(특수판매업체) 핵심방역 수칙 (서울시) 1부. 끝.

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



서울특별시

서울특별시



수신자 직접판매공제조합장, 직판협회장,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장

★주무관 **방만천** 소비자보호팀장 **문주택** 공정경제담당관 11/06 代 박희원

협조자

시행 공정경제담당관-24029 (2020. 11. 6.) 접수 ()

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/
(서소문동)

전화 02)2133-5375 /전송 02)768-8852 / pico1@seoul.go.kr

/ 부분공개(5)

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2020-11-06 13:43:33

붙임 1

중점관리시설(특수판매업체) 방역수칙 (서울시)

구분	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	비고
<p>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 보관(다단계· 후원방문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(발열체크 등) ■ 방역관리자 지정 배치 운영 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행사 등 영업활동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 ■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■ 공연, 노래부르기, 음식제공 등 금지 ■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■ 마스크 미착용자 대비 시설 내 상시비치 ■ 자연환기(창문 개방 등)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시설 완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 ■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	